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2016년 10월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

CONTENTS

[요 약]	i
I. 전자상거래 규정 현황	01
II. TPP 전자상거래 규정의 특징	02
III. TPP 전자상거래 주요 규정 검토 및 현안	05
IV. 결론 및 시사점	14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박 지 은 수석연구원 (☎ 02-6000-5342, jieunpark@kita.net)

최근 통상협상에서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 규정에 관한 논의는 FTA 등 양자 차원, WTO 등 다자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동, 컴퓨팅 시설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요건 등이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에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협정에 담고 있다. TPP는 기존 FTA를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시장 규범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 또는 협력방안 제시에 그쳤다면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의무규정 성격으로 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을 견지하기 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이용’을 강조한다.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향후 관련 논의의 향방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 성장,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전자상거래의 핵심 이슈인 정보 이전의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 등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이 TPP 가입시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전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본 문

I. 전자상거래 규정 현황

- 최근 통상협상에서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국가간 데이터 이동 제약 및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주요 통상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 규범을 새롭게 정립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함
-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공식적 논의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됨
 - WTO 회원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문을 통해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me on E-commerce)을 수립하기로 함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조치 관행은 현재 WTO 제11차 각료회의 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2017년까지 유효함
 - WTO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라는 제한적 성과 외에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성과는 미진한 상태임
-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WTO 차원의 TiSA와 OECD 및 APEC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행 중
 - 전자상거래 규정에 관한 논의는 FTA 등 양자 차원, WTO 등 다자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동, 컴퓨팅 시설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요건 등이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음

Ⅱ. TPP 전자상거래 규정의 특징

1. 총괄

- 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협정에 담고 있음
- TPP 협정문 제14장(전자상거래 :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를 의무규정, 협력규정 등의 성격으로 규정함
 - 총 18개 조항으로, 일반규정(2개), 의무규정(11개), 협력규정(5개) 조항으로 구성됨
- TPP는 기존 FTA를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시장 규범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평가됨
-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정부조달과 금융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부조달과 공공정보 및 관련조치에 대한 적용을 배제함(제14.2조)
 - 또한 적용대상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해 금융정보는 TPP 전자상거래 규정에서 핵심쟁점이 될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유와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제14.1조)

2. TPP 전자상거래 규정의 특징

-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 또는 협력방안 제시에 그쳤다면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의무규정 성격으로 보다 강화된 규범 적용
- 그간 OECD 가이드라인, UN 가이드라인, APEC 정보보호체계, EU 지침 등에서 협력적 성격 또는 제한적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졌던 규범을 강제성을 갖는 의무규정으로 강화
- 또한 기존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협력규정 성격이었던 내용을 대폭 의무규정으로 강화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신규규정도 도입
 - 한미 FTA와 비교할 때 2개 조항이 협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되었으며, 8개의 신규규정 도입

<TPP와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 비교>

TPP		한미 FTA	특징
조항	성격	성격	
1조 용어정의	일반규정	일반규정	신규
2조 범위 및 일반조항	일반규정	일반규정	
3조 관세 부과	의무규정	의무규정	
4조 디지털 상품의 비차별적 대우	의무규정	의무규정	
5조 전자거래 국내법 체계	의무규정	-	
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의무규정	의무규정	협력 → 의무
7조 온라인 소비자보호	의무규정	협력규정	
8조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	-	신규
9조 종이 없는 무역(전자무역)	협력규정	협력규정	협력 → 의무
10조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협력규정	협력규정	
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의무규정	협력규정	
12조 인터넷 접속료 분담	협력규정	-	신규
13조 컴퓨팅 시설의 위치	의무규정	-	신규
14조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스팸)	의무규정	-	신규
15조 회원국 간 협력	협력규정	-	신규
16조 사이버 정보보안 협력	협력규정	-	신규
17조 소스코드	의무규정	-	신규
18조 분쟁해결	의무규정	-	별도규정

- 전자상거래에 관한 글로벌 통상규범으로서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을 견지하기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이용’을 강조함
- OECD, EU 등에서 강조해 온 ‘정보 이용과 보호의 균형’ 측면에서 볼 때 TPP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등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이용 측면을 부각
 -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전자상거래 이슈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Ⅲ. TPP 전자상거래 주요 규정 검토 및 현안

■ TPP 전자상거래 규정 중 국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TPP 의무규정 중 주요 조항에 대해 국내 산업과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①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상품(e-book, 소프트웨어, 게임, 음악, 비디오 등)에 대해 무관세 적용
 - 단, 디지털 상품에 대해 내국세(부가세, 법인세 등)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있음

국문(제14.3조)	영문(Article 14.3)
관세 부과 1. 어떠한 당사국도 일방 당사국의 인(人)과 타방 당사국의 인(人)간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Customs Duties 1.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 사례 】 디지털 콘텐츠는 무관세, 그러나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는 부과

WTO 체제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는 1998년 이래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FTA를 비롯한 기체결 FTA를 통해서도 유형의 디지털재화(소프트웨어 CD, DVD 등)와 온라인 전송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TPP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구적 무관세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내국세 부과는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2015년 7월 1일부터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앱, 음원, 영화파일 등)에 대해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TPP에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 뿐 아니라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내국세도 없애자는 입장이다.

* 한국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의해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과 음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기획재정부, 2014. 8. 6).

② 디지털 상품의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당사국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자국 상품 또는 제3국의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함

– 단,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한류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임

* 제14.4조 2 ~ 4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방송, 정부 보조금 및 교부금 등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국문(제 14.4조)	영문(Article 14.4)
디지털 상품의 비차별적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또는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타방 당사국 인(人)인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1. No Party shall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to digital products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③ 온라인 소비자보호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적극적 기만 행위만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데 반해 TPP에서는 사실오인의 묵인과 같은 소극적 행위도 규제함
- 온라인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만 볼 때 TPP는 한국 국내법에 비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문(제14.7조)	영문(Article 14.7)
온라인 소비자보호 1. 당사국들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Online Consumer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adopting and maintaining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activ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16.6.2 (Consumer Protection) when they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

- 다만, 법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와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법에서는 적극적 기만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뿐 아니라 양벌규정까지 두고 있음
 - * 양벌규정 :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국내에서의 물리적 주재(駐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④ 개인정보보호

- 각 당사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채택·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각 당사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문(제14.8조)	영문(Article 14.8)
개인정보보호 2.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에 있어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 이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소 미흡한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채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보호 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⑤ 정보의 국경간 이전 허용

- TPP 전자상거래규정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정보의 국경간 이전 허용에 있어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일 경우 예외를 인정함

국문(제14.11조)	영문(Article 14.1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당사국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이 인(人)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 한편, 국내제도는 정보의 이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관련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이전 국가, 일시 및 방법 등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함

참고 :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3월에 개정함.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63조2항 개정을 통해 ‘국외이전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정’의 예외를 신설하며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측량정보, 의료보험정보, 보안정보 및 첨단기술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및 국가안보와 산업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국외 유출이 금지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개인정보, 공공정보 등의 국외유출을 금지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한편, 공공정책 목적이라는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실제 국가 간 정보 이동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사례 】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 이전 사례, TPP와 상충되나?

지난 해 7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한국 IMS Health(아이엠에스 헬스) 대표 등 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2011~2014년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47억 건을 약 20억에 불법적으로 구입 · 수집하였으며 이 정보를 가공해 100여억 원에 제약사들에게 판매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한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 · 처리 · 가공되고, 이를 제3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법상 엄연히 불법이지만, 실제 IMS Health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450억 건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외국 기업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

【 사례 】 구글의 지도정보 해외 반출, TPP에 상충되나?

정보의 국경간 이전 허용 관련해 최근 구글 지도정보 해외 반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동 건에 대해 국내법에서는 기본측량성과(지도정보)의 국외 반출을 금지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TPP 가입시 TPP 제14.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간 정보이전」 조항과 상충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TPP에서 지도정보는 정보이전 자유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 법이 TPP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내법에서는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 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도정보일지라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주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 : 각종 보도자료 참고

⑥ 컴퓨팅 시설 위치 지정 금지 (데이터 현지화)

- 컴퓨팅 설비를 당사국 영토 내에서 이용 및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TPP는 해외 진출시 비용 상승과 투자 비효율의 원인이 되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곳에 서버를 둘 수 있도록 보장함

국문(제14.13조)	영문(Article 14.13)
컴퓨팅 시설의 위치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2. 어떠한 당사국도 인(人)으로 하여금 그 영역 내에서의 사업 수행 조건으로 당사국의 영토에서 컴퓨팅 시설을 이용 또는 위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 IT 운영 인프라가 국내에 없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 별도 IT 인프라가 없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공세가 우려되기도 함
- 반면 기술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경우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TPP 역내국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꼽히기도 함
- 우리나라는 미래 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 클라우드(Cloud)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임. IT 기기를 통해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⑦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 (스팸)

- 스팸 등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의무화 하였으며 규제 방식과 수준은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국가별로 ① 스팸 메시지 수신 거부 조치(opt-out), ②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치(opt-in), ③ 스팸 메시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외 기타 조치 등을 선택해서 유지하게 하고 있음
 - * (opt in 방식) 미리 동의, 신청한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는 방식, (opt out 방식)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그 뒤로는 보낼 수 없는 방식
-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협력규정이었던 스팸 방지 조항을 TPP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시켰으나 국내 제도가 엄격해 TPP는 비교적 완화된 규정으로 평가됨
- 한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동의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TPP는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어 국내 제도에 비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국문(제14.14조)	영문(Article 14.14)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에 관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해야 한다.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1.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regarding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⑧ 소스코드 제공 요구 금지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에 있어서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이슈로 기업이 해외 진출시, 당사국의 정부 및 경쟁사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국문(제14.17조)	영문(Article 14.17)
<u>소스코드</u> 1. 어떠한 당사국도 그 영토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의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 타방 당사국 인(人)에 의해 소유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접근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Source Code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참조 TPP와 한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규정의 구성 비교

구분	일반규정	의무규정	협력규정
TPP	정의(14.1), 범위 및 일반조항(14.2)	관세(14.3), 디지털 상품의 비차별적 대우(14.4), 국내 전자거래 프레임워크(14.5),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14.6), 온라인 소비자보호(14.7), 개인정보보호(14.8),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14.11), 컴퓨팅 시설의 위치(14.13),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14.14), 소스코드(14.17), 분쟁해결(14.18)	종이 없는 무역(14.9),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14.10),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분담(14.12), 협력(14.15), 사이버보안 문제에 관한 협력(14.16)
EU	목적 및 원칙(7.48), 예외(7.50)	—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7.49)
페루	일반규정(14.1), 다른 장과의 관계(14.2),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14.3), 정의(14.10)	관세(14.4)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14.8), 소비자보호(14.5), 종이 없는 무역(14.6), 개인정보보호(14.7), 협력(14.9)
미국	일반규정(15.1),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15.2), 정의(15.9)	디지털 제품 비차별/무관세(15.3),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15.4)	온라인 소비자 보호(15.5), 종이 없는 무역(15.6),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15.7) 국경간 정보 흐름(15.8)
호주	목적(15.1),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15.2), 정의(15.10)	관세(15.3)	국내 규제(15.4),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5.5), 온라인 소비자 보호(15.6), 종이 없는 무역(15.7),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15.8),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15.9)
캐나다	일반규정(13.2), 다른 장과의 관계(13.8), 정의(13.9), 적용범위(13.1)	관세(13.3)	소비자보호(13.6), 종이 없는 무역(13.5) 개인정보 보호(13.4), 협력(13.7)
중국	일반(13.1), 다른 장과의 관계(13.2), 정의(13.8)	관세(13.3),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13.4), 분쟁해결의 비적용(13.9)	종이 없는 무역(13.6),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13.5),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13.7)
베트남	일반규정(10.1), 정의(10.1)	관세(10.2)	국내 규제의 틀(10.4), 전자인증, 전자서 명 및 디지털 인증서(10.3), 온라인 소비 자 보호(10.5), 종이 없는 무역(10.7), 개인정보 보호(10.6),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10.8)
콜롬비아	다른 장과의 관계(12.7), 목적과 원칙(12.1), 정의(12.8)	관세(12.2)	협력(12.6), 소비자 보호(12.5), 종이 없는 무역행정(12.4),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12.3)

주 : 진하게 표시한 규정은 TPP에 신규 도입된 규정

IV. 결론 및 시사점

- TPP 전자상거래 규정은 향후 관련 논의의 향방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 성장, 국내 업계의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기존 전자상거래 논의를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시장 규범으로 현재 논의 중인 TiSA를 비롯해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에 준용될 가능성이 높음
 - TPP는 국가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전자상거래의 핵심 이슈인 정보 이전의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담은 협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
- 다만, 한국이 TPP 가입시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어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개인정보 국외이전 자유화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여러 쟁점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협력채널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데이터의 현지화 금지 규정으로 인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불법적인 처리 또는 손실로부터 당사국 정부가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전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정곤 외,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5.12.

이한영, 전자상거래 협상 및 동향, 전국경제인연합 제3차 대외전략협의회 발표 자료, 2016.1.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2015.6.

이중구, TPP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한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기업설명회 발표자료, 2016.7.

[국내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TPP 전자상거래 규정 연구

Trade Focus 2016년 37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0월 11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